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소영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4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05일
발 의 자 : 김소영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정태, 김종무,
김태호, 김화숙, 노승재,
문병훈, 오한아, 이호대,
장인홍, 황규복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「공공디자인법」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, 공공디자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, 공공디자인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책무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시책 및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
- 나.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가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공디자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진흥과”를 “진흥 및 통합관리와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진흥”을 “진흥 및 통합관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공공 디자인의 <u>진흥과</u> 공공디자인의 품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 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<u>진흥 및 통합관리와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생 략)</p> <p>1. 공공디자인 <u>진흥</u>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p>	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공공디자인 <u>진흥 및 통합관리</u>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</p>